

일본, 주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배리어프리 기준 시행

https://www.mlit.go.jp/report/press/house05_hh_001043.html
https://www.mlit.go.jp/report/press/house05_hh_001011.html
<https://www.mlit.go.jp/jutakukentiku/content/001857777.pdf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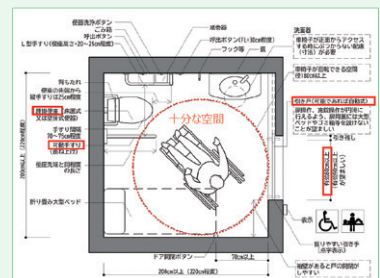
일본 국토교통성은 화장실·주차장·극장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배리어프리 기준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, 이에 대한 설명회를 2월 개최하였다.

국토교통성은 고령자와 장애인의 원활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화장실·주차장에 대한 배리어프리 기준을 정비하고, 극장 등 관람 시설의 객석 기준을 새롭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아 ‘고령자와 장애인의 이동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(高齢者、障害者等の移動等の円滑化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令)’을 지난해 6월 개정한 바 있다.

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휠체어 사용자용 화장실은 건축물 층별로 1개소 이상, 이용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. 또한 바닥면적이 1,000㎡ 미만인 소규모 층과 1만㎡ 초과인 대규모 층에는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는 등 세분화하여 규정하였다. 출입구 폭(80cm 이상), 출입구 개폐 방식 등 개별 시설에 대한 기준도 명시되었다. 관람 시설에 대해서는 총 객석 수 대비 마련해야 할 휠체어 사용자용 객석 비율을 규정하였는데 400석 이하인 경우 2석 이상, 401석 이상인 경우 0.5% 이상 설치해야 한다. 객석 폭(90cm)과 깊이(135cm)도 규정하였으며, 인접하여 동반자용 좌석 또는 공간을 설치할 것과 휠체어 이동에 적합한 경로(슬로프 등)를 설치할 것도 명시하고 있다. 주차장에는 주차단위구획 수 대비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전용구획을 설치해야 한다. 주차단위구획 수가 200개 이하면 2% 이상, 201개 이상이라면 1%+2개 이상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. 또한 전용주차구획의 폭은 350cm 이상으로 출입구 등에서 멀지 않은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.

설명회는 건축 설계자, 관련 심사관 등을 대상으로 열렸으며 개정 및 제정된 기준과 내용, 운용 방법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. 새로운 기준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, 적용될 예정이다.

	ケース1	ケース2 (便所のない階がある場合)	ケース3 (①の場合)	ケース4 (②の場合)
車椅子利用者用便所の設置イメージ				
不特定多数の者等が利用する便所設置階数	5	3	2	5
車椅子利用者用便所の必要設置数	5以上	3以上	2以上	5以上



건축물의 휠체어 이용자 화장실 설치 예와 구조 기준

출처: 国土交通省. (2024). 便所、劇場等の客席、駐車場に係るバリアフリー基準の見直しについて. <https://www.mlit.go.jp/jutakukentiku/content/001857777.pdf>(검색일: 2025.3.5.)